

2022년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 운영지침

1. 자격요건

① 기업

- 신청일 기준 제주소재, 제주에 사업자등록을 한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수 1인 이상 고용
- 근로자에게 숙소 또는 주거비(근로계약서, 급여명세서에 명시)를 지원하는 기업
- 다만, 소재지 관할이 본사와 분리되어 있는 제주소재 지사, 지점 참여가능
- ※ 참여제외 기업: 향락업체, 비영리목적 사업자, 공기업, 어린이집, 자가소비 생산활동
- ※ 참여제한 기업: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인위적 감원(정리해고, 해고, 권고사직, 명예퇴직 등)사실이 있는 기업

② 근로자

-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서 신청일 현재 도내 주소를 두고있는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정규직 청년
- 월급여(주거지원비 제외) 334만원 미만인 자
- ※ 4대보험 가입 / 주40시간 이상 근무 / 최저임금법 준수
- ※ 반드시 해당 숙소(주택) 주소지와 주민등록 주소지는 일치되어야 함
- ※ 제외대상 : 재학생, 실습 또는 병역특례자, 현장실습자, 주거지원 관련 지원금 수급자, 배우자 및 4촌이내의 친인적, 주택보유자, 사업자등록증인자 등

2. 지원내용 및 한도

- ① 지원내용 : 참여기업이 숙소를 임차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거나 근로자에게 주택보조금(임차료)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

구분	기업 숙소임차, 근로자 제공(1유형)	근로자에게 주택보조금 지원(2유형)
지원액	산정된 월 임차료의 60% (근로자 1인당 최대 30만원)	주택 보조금(수당)의 80% (근로자 1인당 최대 30만원)
지원금 산정기준	1) 월세 및 연세 등: 월 임차액 또는 월 임차 환산액 2) 전세: 도 금고(농협) 정기예금금리 연 0.94%를 적용하여 월 임차액으로 환산한 금액 ※월 임차료 : (전세금×0.0094)/12월	참여기업이 근로자에게 매월 지원하는 주택보조금(수당)

- ※ 지원 제외 : 숙소보증금, 월 관리비, 사업주 또는 근로자와 직·간접적으로 연관된 건물과 기존 기숙사로 이용 하던 건물을 임차한 경우

- ② 지원한도: 사업 참여기업별 최대 10명까지 지원 (1~15일: 최대5명, 16인 이상: 근로자 현원의 30%)

- ③ 지원기간: 근로자기준 지원결정일(약정개시일)로부터 2년간 지원 (생애 1회)

- ※ 사업개시일로부터 3개월(90일)이내에 중도포기 시, 중도포기한 달은 지원하지 않음
(단, 15일 이상 근무할 경우 전액지원)

3. 지원금 신청 및 지급

① 신청 시기: 분기별(3,6,9,12월)

※ 별도의 지원금 신청 공고는 없으며 참여기업이 신청시기에 맞추어 지원금신청을 하여야 하며, 지원금 신청 없이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지원금 신청 불가

② 신청 기간: 매분기 말월(3, 6, 9, 12월) 10일까지

③ 신청 금액: 지원금 산정 금액

④ 신청 방법: 사업참여기업에서 먼저 임대인에게 임차료를 지급하고 (근로자에게 주택수당 먼저 지급) 신청월 전월까지의 지원금을 해당 신청월(3,6,9,12월)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원금 신청서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(팩스, 이메일)하여야 함

※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,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.

4. 참여 신청서 제출

- 사업 참여를 신청하는 기업은 매월 1~10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(일자리과 고용복지플러스센터)에 방문 제출

<< 사업 신청 시 구비서류 >>

① [서식1]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1부, [서식2] 협약서 1부

② [서식3]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각 1부

③ [서식4] 자격확인서류 각 1부, [서식5] 청렴이행서약서 1부

④ 사업자등록증, 4대보험 완납증명서,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각 1부

⑤ (기업의)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

⑥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, 임차건물 등기부등본 1부

⑦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, 근로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본, 초본 각 1부

⑧ 신청 근로자의 근로계약서(주거비 지원 또는 숙소 지원 명시) 1부

⑨ 근로자 본인, 배우자 무주택 증명

→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[취득세(부동산), 재산세(주택)]1부

※ 취득세(부동산), 재산세(주택) 항목에 대한 '과세 사실 없음' 증명

(과세년도: 2021 ~ 2022년도, 과세지역 : 제주시, 서귀포시)

⑩ 고용우수기업 추가지원(최대13명) 대상 증빙서류(해당기업에 한함)

※ 추가적인 서류 요청 가능,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